
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,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 반영(안 제7조)

다.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10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

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를 “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”을 “「도시개발법」 및”으로, “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재원)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재원은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0조제2항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조성한다.

제3조 제목 “(세출)”을 “(용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 세출은”을 “특별회계의 용도는”으로, “제13조 규정과”를 “제13조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용지개발담당”을 “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의회의 원”을 “시의회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도시과 용지개발담당주사가”를 “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이”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	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개발법」 및 ----- -----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----- ----- -----.
제2조(특별회계의 자원) 특별회계의 자원은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성한다.	제2조(특별회계의 자원)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자원은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0조제2항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조성한다.
제3조(세출) 특별회계 세출은 「구미시 도시개발 조례」 제12조 및 제13조 규정과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	제3조(용도) 특별회계의 용도는 ----- ---- 제13조와 ----- ----- --.
제5조(회계공무원) ① 특별회계의	제5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

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
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
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
원을 둔다.

1. (생략)

2. 수입금출납원 : 용지개발담당

② (생략)

제7조(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)

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
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회
계과장, 건설과장, 도시과장, 시
의회의원 3명 이내, 도시계획
전문가 3명 이내에서 위원회의
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
명 또는 위촉한다.

⑤·⑥ (생략)

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
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도시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도시개발업무
담당계장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
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
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
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시
의회의원 -----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도시

<u>과 용지개발담당주사가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제10조 (생 략)</u>	<u>개발업무 담당계장이 ----.</u> <u>제10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</u> <u>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<u>로 한다.</u> <u>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u>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도시개발법」

제60조(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생략
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.

1.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
2. 정부의 보조금
3.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4.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
5. 제85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된 과태료
6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6조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7.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
9.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10. 차입금
11.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·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

□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

제78조(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)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"이란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.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

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도 시 과
입 안 자	과 장	남 병 국
	담 당	김 현 호
	담 당 자	하 민 정 (480-5413)